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653호, 2025. 1. 7. 공포, 2025. 7. 8. 시행)됨에 따라, ‘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’의 구축·운영, 지방자치단체 ‘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’의 설치·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(안 제65조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‘긴급구조지휘대’의 명칭이 ‘긴급구조현장지휘대’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

나.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사항 마련(안 제73조의12 신설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‘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’의 구축·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

다.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(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)

위기경보,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·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

라.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 사항 마련(안 제83조의6 신설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·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,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·재정·기술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

마.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(안 제86조의2)

재난·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를 전담기구 협의회 정원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

바. ‘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’ 인용조문 정비(안 [별표 1])

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(영 제43조의11)되어 이를 인용하는 [별표 1]을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 제목 “(긴급구조지휘대 구성·운영)”을 “(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긴급구조지휘대는”을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”으로, “긴급구조지휘대의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긴급구조지휘대”를 “긴급구조현장지휘대”로 한다.

제8장에 제73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12(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3항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효율적인 안전신고의 관리·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·개선 및 정보의 분석·활용
2. 안전신고 중 법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
3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신고 접수·이송, 처리결과 관리·점검을 위한 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전자메일 및 주소 정보 수집·이용

4. 그 밖에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안전신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, 관계 기관·단체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83조의2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통보된 때
 2. 「기상법」 제15조제1항의 특보 및 예비특보가 통보된 때
 3.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진속보, 지진조기경보, 지진해일주의보, 지진해일경보, 화산재주의보, 화산재경보가 통보된 때
 4.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,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
 5.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때
- 제83조의6부터 제83조의14까지를 각각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15까지로 하고, 제8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3조의6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

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 수립
2.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방법, 교통단속, 시설관리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
3. 수집된 영상정보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
4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,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, 개인정보 보호 방안,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
5.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또는 인력 협의
6.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점검
7.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 등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당연직 위원

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

나. 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,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 지원청 담당과
장

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
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
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

가.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
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나.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
문가 또는 공무원

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
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

라. 그 밖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 재난관리 업
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호구
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, 통합관제센터의
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
을 활용하는 경우 검증·인증 체계 구축,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
수립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

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전체를 외부 기관·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인력을 대상으로(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⑧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,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83조의13(중전의 제83조의12)제4호 중 “제83조의11제1항”을 “제83조의12제1항”으로 한다.

제86조의2제2항 중 “80명”을 “12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8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“제43조의9”를 “제43조의11”로 한다.

별표 1의3 제2호차목2) 중 “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”를 “테마파크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6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<u>긴급구조지휘대 구성·운영</u>)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<u>긴급구조지휘대</u>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<u>긴급구조지휘대</u>는 소방서현장지휘대, 방면현장지휘대,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, 구분된 <u>긴급구조지휘대의</u>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긴급구조지휘대의</u>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u><신 설></u>	제65조(<u>긴급구조현장지휘대 구성·운영</u>) ① ----- <u>긴급구조현장지휘대</u>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긴급구조현장지휘대</u>는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</u>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긴급구조현장지휘대</u>----- ----- -----. 제73조의12(<u>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13제3항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효율적인 안전신고의 관리·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 ① ~ ⑦ (생략)
<신설>

1.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·개선 및 정보의 분석·활용
 2. 안전신고 중 법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전자신고 창구의 운영
 3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안전신고 접수·이송, 처리결과 관리·점검을 위한 신고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전자메일 및 주소 정보 수집·이용
 4. 그 밖에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안전신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, 관계 기관·단체에 소속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83조의2(정보 제공 요청 방법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- ⑧ 법 제74조의3제10항에서 “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기 정보가 통보된 때

2. 「기상법」 제15조제1항의 특보 및 예비특보가 통보된 때

3.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진속보, 지진조기경보, 지진해일주의보, 지진해일경보, 화산재주의보, 화산재경보가 통보된 때

4. 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,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의 발생 징후가 현저한 때

5.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때

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

⑨ -----
-- 제8항-----

외에 정보의 요청, 제공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.

제83조의6(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방침 수립
2. 법 제74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방법, 교통단속, 시설관리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
3. 수집된 영상정보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·대비·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
4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, 영상

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, 개인
정보 보호 방안, 새로운 기술
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

5. 통합관제센터의 예산 또는
인력 협의

6.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
점검

7.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
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·
조정 등

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제센터
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
합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
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제
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지방자
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
된다.

③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
다.

1. 당연직 위원

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
경찰관서의 장 및 소방관
서의 장

나. 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,
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 지

원청 담당과장

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
통합관계센터 운영을 담당
하는 부서의 장

2. 위촉직 위원: 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
위촉하는 사람

가. 주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
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
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
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
사람

나. 개인정보 보호 또는 법률
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
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
무원

다.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
영상정보 보안에 관한 학
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
전문가 또는 공무원

라. 그 밖의 해당 지방자치단
체 및 관할 공공기관에서
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
공무원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

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,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는 경우 검증·인증 체계 구축,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수립 등 인공지능 기술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 전체를 외부기관·업체에 일괄적으로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관제 인력을 대상으로(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⑧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,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	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<u>제83조의6 ~ 제83조의11</u> (생략) <u>제83조의12</u>(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) 행정안전부장관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<u>제83조의11제1항</u>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. (생략)	<u>제83조의7 ~ 제83조의12</u> (현행 제83조의6부터 제83조의11까지와 같음) <u>제83조의13</u>(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83조의12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
<u>제83조의13 · 제83조의14</u> (생략) 제86조의2(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)	<u>제83조의14 · 제83조의15</u> (현행 제83조의13 및 제83조의14와 같음) 제86조의2(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)

성·운영 등) ① (생략) ②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<u>80명</u>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. ③ ~ ⑦ (생략)	성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120명</u> ----- 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4124